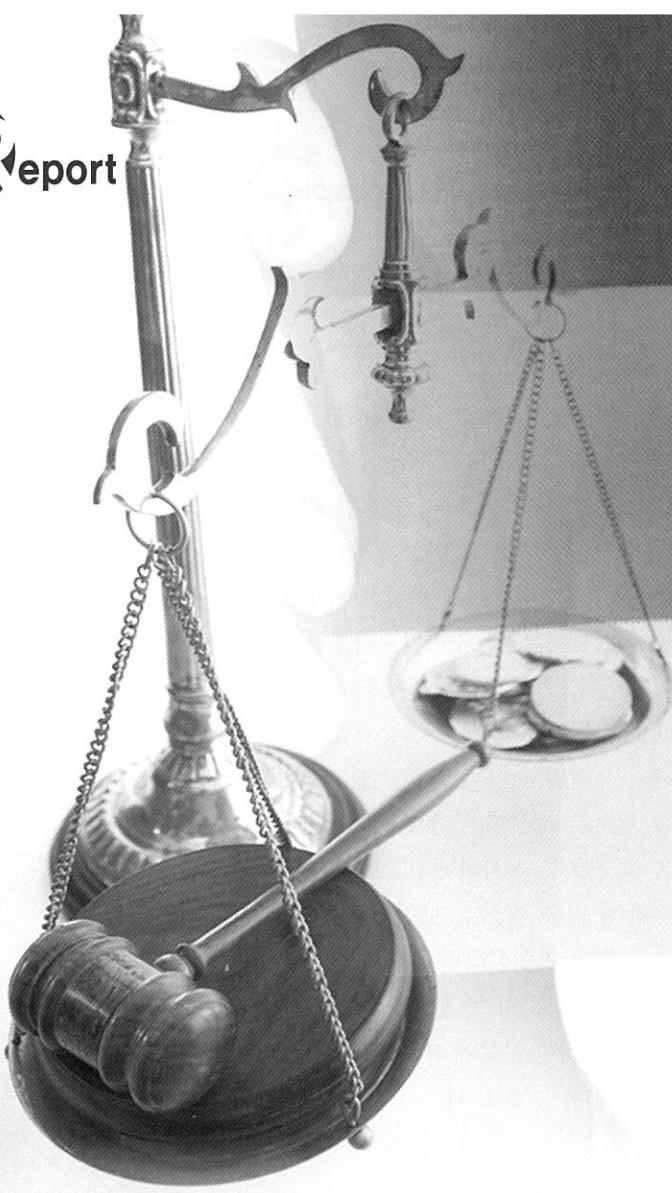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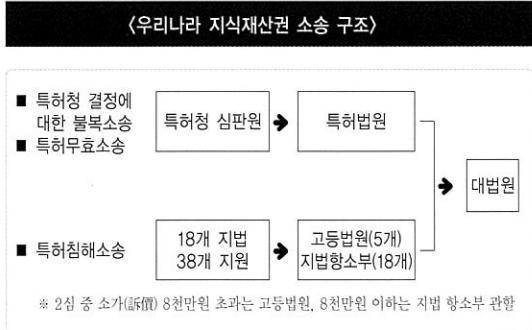


# 독일의 특허소송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소송

**우**리나라도 독일과 유사하게 특허소송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거절불복·무효와 관련된 소송은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되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지방법원 → 지법항소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독일의 특허소송 체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쳐야 하는데 비해, 독일은 직접 연방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을 전국에 있는 18개 지방법원과 38개 지원에서 처리하는데 비해, 독일은 전국에 있는 116개 지방보통법원 중 12개의 법원으로 사건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4조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80% 이상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심) 및 서울고등법원(제2심)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민사법원들은 대부분 연간 특허소송 건수가 매우 적어(5건 내외)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소송의 정확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별 특허침해소송 접수 건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1심	125	70	74	129	184
서울중앙	86	33	37	75	153
서울동부	4	3	3	7	4
서울남부	3	2	1	4	1
서울북부	2	0	3	2	3
서울서부	2	3	5	5	1
의정부지법	2	0	1	11	3
인천지법	3	2	1	3	2
수원지법	3	4	4	6	1
춘천지법	2	0	1	2	0
대전지법	2	6	2	3	6
청주지법	1	0	2	0	0
대구지법	3	8	7	3	4
부산지법	7	7	3	3	2
울산지법	0	0	0	0	0
창원지법	0	2	1	0	2
광주지법	3	0	1	4	1
전주지법	0	0	1	1	1
제주지법	2	0	1	0	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심	2심 소계	20	25	28	41
	서울	16	19	22	36
	대전	0	1	3	0
	대구	1	0	0	3
	부산	2	4	1	1
	광주	1	1	2	1
대법원		6	6	8	14
합 계		151	101	110	184
					252

(출처: 사법연감)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을 담당하는 법원의 수를 현행보다 대폭 축소하고 전문재판부를 설치함으로써 소송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과 유사하게 일본도 2004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침해소송 제1심의 관할 법원을 기존 50개 지방재판소에서 2개 지방재판소(도쿄, 오사카)로 대폭 축소한 사례가 있다.<sup>29)</sup> 또한, 2005년에는 지식재산 고등재판소를 도쿄에 신설하여 특허행정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일

29) 일본 민사소송법 제6조(특허권등에관한소 등의 관할)제1항 :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이하 '특허권등에관한소'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1. 東京고등재판소, 나고야고등재판소, 센다이고등재판소 또는 샤포로 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 : 東京지방재판소
2. 大阪고등재판소,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또는 다키마쓰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 : 大阪지방재판소

②특허권등에관한소에 대하여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전항 각호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간이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재판소에도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화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 각국도 오래전부터 특허소송의 집중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이미 1977년에 특허법원, 1998년에 특허지역법원을 각각 런던에 설치함으로써 모든 특허소송의 1심 관할을 집중하였고, 미국은 1982년에 특허소송 제2심의 관할을 집중하기 위해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s)을 워싱턴 D.C.에 설치하였다.

한편, 최근 지식재산권이 기업 활동의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관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 지식재산권 소송 처리 건수 〉

구분	특허 심판원 심결건수	심결최소소송 건수		침해소송 접수 건수		
		특허법원 판결건수	대법원 판결건수	침해 1심	침해 2심	대법원
2006	10,334	1,191	472	125	20	6
2007	11,626	1,251	520	70	25	6
2008	11,628	1,566	581	74	28	8
2009	9,764	1,203	556	129	41	14
2010	9,274	1,013	399	184	54	14
2011	10,570	1,236	370	-	-	-

(출처: 특허청, 특허법원 및 대법원 홈페이지)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특허소송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다.

먼저, 특허소송을 특허행정소송(심결최소소송)과 특

허침해소송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다른 법원의 관할로 하는 점은 양국이 같다. 우리나라는 심결최소소송을 위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하였고, 독일은 연방특허법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을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과 해당 지원이 처리하는 데 비해, 독일은 특허침해소송 제1심법원을 주(州)마다 1개 또는 2개로 집중하였다. 이는 최근 특허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특허소송을 담당하게 되면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속성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한 전문성 제고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화 경향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특허소송 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이 시급하다. 2012. 9 |



임호순

특허청 정밀기계심사과장